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산양소송의 주요 내용과 쟁점

1. 처분의 경위 및 위법성

- 양양군수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신청 신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2015. 9. 14.자 환경부 고시 제2015-180호로 고시함.(이에 대하여 '설악산국립공원지킴이국민행동'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제1심 재판이 진행중임)
- 양양군수는 문화재청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문화재청은 동물, 식물, 지질, 경관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현지조사 및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사 및 운행 등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2016. 12. 28. '불허'처분을 함.
- 양양군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문화재청의 위 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처분이 문화재의 활용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보존과 관리'에 치중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하다고 판단함. 이를 근거로 양양군수는 문화재청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재신청함.
- 문화재청은 2017. 11. 24. 문화재현상변경을 조건부로 허가하였으나, 위 처분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의결을 무시하고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 필요성 내지 타당성에 대한 어떠한 추가조사 및 근거자료도 없이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함.(이에 대하여 양양군민, 강원도민, 산악인, 환경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소송인단이 지난 1월 10일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 본 소송의 경우, 위 1월 10일자 취소소송과 청구취지는 동일하나, 위 소송의 원고들과는 별개의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원고들이 제기하는 소송임.

2. 원고 산양들의 원고적격 및 후견인 박그림

- 원고 산양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구간에 서식 중인 28마리의 동물들로, 우리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I급 동물이며, 천연기념물 제217호임. 또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카테고리 Ia등급을 부여받아, 가장 엄격하게 보호받아야 할 지위에 있으며, IUCN이 정한 멸종위기종(적색목록 평가 범주 '취약'등급에 해당하는 종)임.
- 산양은 '자연물'로서 현재 우리 법원은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마1148,1149 이른바 '도롱뇽사건' 판결 참조), 미국의 경우 1972. Sierra Club v. Morton 사건에서 대법관 William D. Douglas 판사는 '훼손될 위험에 처한 자연이 그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환경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될 것'임을 인정한 바 있고, 1979. 하와이 새 빠리야가 환경단체 등과 공동원고로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연방지방법원 및 항소법원은 "빠리야는 멸종위기종보호법상 멸종위기종으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지닌 법인격으로 법률상 지위를 가지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등이 존재함.

- 우리나라의 경우 또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생물다양성과 야생생물, 자연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물)에 대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할 것임. 결국 동물을 포함한 자연물과 자연 자체에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못할 근거는 없음.
- 산양은 위 사업구간에 서식하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 행동반경이 1km² 내외로 매우 좁은 특성이 있어, 케이블카 건설에 수반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개체군이 고립되며 멸종위기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음. 문화재청이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의 산양의 보존과 관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는바, 원고 산양으로서는 문화재청의 위 처분이 취소될 경우 자신의 생존, 종 보존 및 설악산 지역 내 서식 환경 보존이라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처분의 취소를 받을 법률상 이익 있는 경우’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됨.
- 원고 산양을 대신하여 원고 산양의 이익을 위해 소송활동을 할 ‘후견인’제도가 우리 민법과 ‘조리’에 따라 인정된다고 할 것임. 후견인 박그림의 경우 1992년부터 설악산 아래에서 거주하며 설악산과 산양 등 야생동식물 보호활동을 해왔으며, 문화재청과 녹색연합이 발간한 ‘산양 서식지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참여한 등 원고 산양의 후견인으로 적합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임.

3. 원고 김산하 및 동물권연구단체 피앤알의 원고적격

- 원고 김산하는 생태학자이자 생명다양성 재단 사무국장 등의 지위에 있으면서, 야생동식물 및 산양에 관하여 조사하고 생명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연구 활동을 하고 있음. 문화재청의 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산양이 멸종될 경우 원고 김산하를 비롯한 다수 학자들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받게 됨.
- 원고 동물권연구단체 피앤알(PNR)은 산양을 포함한 비인간동물의 권리를 연구하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소송활동 및 법제도 개선 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문화재청의 위 처분으로 인하여 산양의 생존권, 서식환경에 대한 이익이 침해될 경우, 동물의 생명보호를 위한 활동의 자유를 포괄하는 동물보호법 등에 근거한 PNR의 산양의 권리를 위한 활동 역시 제약을 받게 될 것임.

4. 결국, 위 원고들은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본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으며, 문화재청장이 2017. 11. 24. 양양군수에 대하여 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는 취소되어야 함.